

# 이사회 규정



Everyday Everywhere EcoPro

**1. 목적**

**2. 적용범위**

**3. 용어의 정의**

**4. 책임 및 권한**

**5. 세부 규정**

5.1 구성

5.2 이사회 종류

5.3 이사회 소집

5.4 부의안건

5.5 결의방법

5.6 이사회 내 위원회

5.7 권한 위임

5.8 의사록

## 1. 목적

1.1 본 규정은 주식회사 에코프로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 이사회(이하 “이사회”라 한다)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적용범위

2.1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3. 용어정의

3.1 전환사채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.

3.2 신주인수권부사채란 회사의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.

## 4. 책임 및 권한

### 4.1 이사회

4.1.1. 이사회는 "5.4."에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고 보고를 받는다.

4.1.2.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
- 1) 이사회는 이사의 청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.
- 2) 이사는 필요 시 2 인 이상의 동의를 통해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며, 이 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사후 관리의 책임을 가진다.
- 3) "4.1.2.1)"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권을 행사한 이사회는 그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4.1.3. 이사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4.1.4. 이사회는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### 4.2 의장

4.2.1.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
4.2.2. 대표이사가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 36 조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이사회의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.

4.2.3. 의장은 이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.

### 4.3 간사

- 4.3.1. 이사회에는 간사를 두고 간사는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.
- 4.3.2.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, 이사회 사무전반을 관리한다.

## 5. 세부 규정

### 5.1 구성

- 5.1.1.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- 5.1.2. 이사회 구성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.
- 5.1.3. 이사회에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사외이사를 둔다.

### 5.2 이사회 종류

- 5.2.1.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5.2.2.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생략할 수 있다.
- 5.2.3.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# 5.3 이사회 소집

#### 5.3.1. 소집권자

- 1)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의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"4.2.2."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2)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장이 이사의 소집청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거나,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# 5.3.2. 소집절차

- 1)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2일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2)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 1항의 소집절차를 생략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
### 5.4 부의안건

5.4.1. 이사회 부의안건은 결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.

#### 5.4.2. 이사회 결의사항

- 1) 법령 및 정관상의 결의사항
  - 1-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 - 1-2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  - 1-3) 지점의 설치, 이전, 폐지
  - 1-4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, 폐지 및 위원의 선임, 해임
  - 1-5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
  - 1-6) 주주총회의 소집

1-7)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의 허용

1-8) 영업보고서의 승인

1-9) 재무제표의 승인

1-10) 이사에 대한 겸업의 승인

1-11) 특수관계인 및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

1-12) 이사의 회사의 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
1-13) 신주의 발행

1-14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
1-15)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

1-16)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
1-17)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의 결정

1-18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, 주식의 병합·분할 및 종류의 변경, 자본의 감소

1-19) 자기주식의 소각

1-20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부여의 취소

1-21) 분기배당의 결정

1-22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결의

1-23) 간이영업양도·양수·임대 등

## 2)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
2-1) 정관 변경

2-2)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

2-3)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
2-4) 이사,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

2-5) 자본금의 감소

2-6) 회사의 합병, 분할, 분할합병

2-7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
2-8)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의 승인

2-9) 주식의 분할

2-10) 이사,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

2-11) 이사 보수 한도의 결정

2-12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경

2-13) 현금·현물·주식배당의 결정

2-14) 준비금의 감소

2-15) 상법 및 기타 법령에서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항

## 3)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

- 3-1)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의 설정
- 3-2)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- 3-3) 공장, 사무소, 사업장 등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
- 3-4) 건 별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본총액의 1% 또는 건 별 금 오십억원(₩5,000,000,000) 이상의 자산의 취득 처분 및 양수 양도
- 3-5) 건 별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본총액의 1% 또는 건 별 금 오십억원(₩5,000,000,000)을 초과하는 자금의 차입, 기타 채무 부담, 자금의 대여, 신용공여, 대여 및 담보의 제공
- 3-6) 영업 및 구매 계약을 제외한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및 취소, 해제, 해지
- 3-7) 소가 금 일십억원(₩1,000,000,000)을 이상인 소송(분쟁)의 제기, 소송참가, 취하, 상소포기, 청구 포기, 인낙, 조정, 화해 및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종료
- 3-8) 소가 금 일십억원(₩1,000,000,000)을 이상의 소송이 접수된 때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종료
- 3-9) 이사회 규정 제·개정
- 3-10) 기타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,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, 관계 법령상 이사회 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

#### 5.4.3. 이사회 의 보고사항

- 1) 경영성과 및 경영에 관한 주요 집행상황
- 2) 환경, 안전, 준법에 관한 주요 사항
- 3) 위원회가 위임을 받아 처리한 사항
- 4) "4.1.2.1"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보고를 요구한 사항
- 5)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

### 5.5 결의방법

- 5.5.1. 이사회 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
- 5.5.2.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5.5.3. 이사회 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5.5.4. "5.5.3"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# 5.6 이사회 내 위원회

- 5.6.1.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 - 1) 주주총회 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
- 2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3)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4)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5.6.2.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.

## 5.7 권한의 위임

5.7.1.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## 5.8 의사록

5.8.1. 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5.8.2.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5.8.3.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5.8.4. 회사는 제 3 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### 부칙 (2001. 03. 19)

1 조 시행. 본 규정은 2001 년 3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 (2018. 08. 29)

1 조 시행. 본 규정은 2018 년 8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 (2021. 05. 01)

1 조 시행. 본 규정은 2021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 (2022. 04. 27)

1 조 시행. 본 규정은 2022 년 4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 (2023. 03. 30)

1 조 시행. 본 규정은 2023 년 3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.